

#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

## 자랑스런 박물관인상 운영규칙

1998. 1. 1. 제정  
2011. 3. 9. 1차 개정  
2014. 5. 13. 2차 개정  
2018. 3. 28. 3차 개정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'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' “자랑스런 박물관인상”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상의 종류와 시상인원)

① “자랑스런 박물관인상”의 부문은 다음으로 구분한다.

1. 원로부문
2. 중진부문
3. 젊은박물관인부문

② 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2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.

### 제3조(수상자의 자격기준)

수상자의 자격은 우리 협회 회원과 박물관 종사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 단,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 심사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.<개정 2018.3.28.>

#### 1. 수상자격

- ① 박물관 설립·운영자
- ② 박물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할 자
- ③ 박물관 관련 분야 종사자
- ④ 상기 ①~③ 중 한 분야 이상을 통해 박물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

## 2. 부문별 자격

[상기 1. 수상자격을 충족한 각 부문별 자격]

- 원로부문 : 65세 이상, 작고자 포함
- 중진부문 : 50세~65세 미만
- 젊은부문 : 50세 미만

### 제4조(수상후보자의 공모)

수상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한다.

1. 우리 협회 전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 매년 시상일 1개월 전까지 추천하도록 한다.
2. 자기 추천은 할 수 없다.

### 제5조(이중수여금지)

동일한 업적이나 공적으로 유사한 상을 수상한 자는 일정 연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### 제6조(구비서류)

① 응모신청 또는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추천서(소정양식) 1부
2. 공적조서 1부
3. 이력서(사진부착) 1부
4.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5. 상기 1~4항의 '아래 한글 파일'

② 접수된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
### 제7조(추천위원회 구성)

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추천을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① 추천위원회는 국립, 공립, 사립, 대학 등 설립주체별 대표 및 각 직능단체별 대표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인 이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### 제8조(추천위원의 운영)

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협회장으로 한다.

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- ③ 추천위원회는 상의 권위와 수상자격에 맞는 후보자를 위원장에게 추천 한다.
- ④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.
- ⑥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피추천인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.

### 제9조(추천위원회 회의소집)

위원회 회의는 추천위원 2/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### 제10조(심사위원회 구성)

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- ① 심사위원회는 해당 전문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7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8.3.28.>

### 제11조(심사위원의 운영)

-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.
-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- ③ 심사위원회는 공적사항을 심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였을 때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심사평가서 1부
  2. 공적요약서 1부
-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.

### 제12조(심사위원회 회의소집)

위원회 회의는 협회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### 제13조(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)

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자 및 심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.

#### 제14조(수상자 승인)

회장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보고 받은 후,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상자로 확정한다.

#### 제15조(시상)

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, 매년 5월 개최되는 '전국박물관인대회'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16조(시상상품)

“자랑스런 박물관인상”에 대한 시상상품은 다음으로 한다.

1. 상장
2. 메달
3. 기타

#### 제17조(대리수상)

수상대상자가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지명한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.

#### 제18조(기타사항)

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## 제19조(규정개정)

이 규칙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.<개정 2018.3.28.>

### 부 칙

#### 제1조(시행일)

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제2조(공적확인)

심사위원은 현지에 출장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.

### 제3조(수당 및 심사료)

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심사료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 제4조(세부기준)

후보자의 심사기준과 세부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개정 2018.3.28.>